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2369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9. 7. 17.

판결 선고2019. 8.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48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7. 5. 31. 접수 제102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행, E은행, F, G(주)는 H에게 돈을 대출하였고, 2011. 4. 27.경과 2013. 6. 21.경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그 무렵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H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54111호로 H를 피고로 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8. "H는 원고에게 57,133,210원과 그중 26,699,397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H에 대한 채권은 2018. 10. 17. 기준으로 원금 11,867,131원, 이자 15,625,882원, 가지급금 137,650원 등 합계 27,630,663원이다.

라. 한편 H는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1994. 4. 14. 1994. 4.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H는 2007. 5. 31.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 (3) 설령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4) 따라서 원고는 H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설령 피고들이 H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1994. 4. 13.경 내지 2007. 5.

31.경으로부터 각각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들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피담보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H와 절친한 사이로 H가 여러 차례 형편이 나아지면 위 각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 B에게 소액으로 위 피담보채권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H가 2019. 6. 20.경 피고 B에게, 위 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5,000만 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H와 피고 B의 관계, 위 지불각서의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H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선아

별지